

# 도봉서원 사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접수 번호	5
----------	---

2014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청원인 : (사)도봉서원 원장 이병준 외 31명
- 나. 소개의원 : 김동욱(새정치민주연합, 도봉구 제4선거구)
- 다. 접수일자 : 2014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14년 11월 4일
- 마. 상정결과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채택)

## 2. 청원요지

- 도봉서원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는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사액서원임.
- 2009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2010년 ~ 2013년 복원정비계획 심의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2014년 8월 28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발굴유구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복원사업이 부결됨으로써 복원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임.

- 2012년 5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 도봉서원 사우와 담장, 유도문을 철거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서울시는 도봉서원 복원은커녕 원상회복에도 미온적임.
-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도봉서원 사우를 원상회복하여 지역 주민과 유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함.

### 3. 청원소개의원 요지(소개의원 : 김동욱 의원)

-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된 도봉서원은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서원으로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인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고 있으며, 선조와 영조로부터 사액을 받은 서원으로 성균관, 양천향교 등과 함께 조선 유교 문화의 상징과 같은 곳임.
- 도봉구에서는 1997년부터 도봉서원 복원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도봉서원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도봉서원의 복원사업을 추진하다가 2014년 8월 28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음.
-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도봉서원 소유의 사우와 담장, 유도문을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도봉서원 복원을 전제로 철거에 동의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는 사업 중단 결정 이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사단법인 도봉서원이 원하는 2012년 철거 전 도봉서원의 원상회복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본 청원은 2014년 8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로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중단된 만큼 2012년 5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로 철거한 도봉서원 사우(祠宇)와 담장, 유도문(由道門)을 발굴조사 전 원상으로 복원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
- 2009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된 도봉서원은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사액서원으로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인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고 있으며 성균관, 양천향교 등과 함께 조선 유교 문화의 상징과 같은 곳으로

1573년 옛 영국사 터에 창건되어 임진왜란으로 전소했다가 1608년 중건된 후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헐렸고 1971년 다시 복원되었으나, 도봉구에서는 2010년 겸재 정선의 도봉추색도를 반영한 도봉서원 중흥기의 건축과 조경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음.

- 서울시는 도봉구청의 요청에 따라 2012년 발굴조사비 10억원을 편성하여 교부하였고, 2012년 5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3년 9월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발굴유구가 도봉서원의 초창기 유구로 추정되나 발굴된 유구와 고서화에서 확인되는 중흥기의 모습이 너무 달라 도봉서원 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발굴된 건물지가 도봉서원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복원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의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2014년 9월 발굴된 건물지가 도봉서원임을 명확하게 밝힐 근거가 없고 발굴조사 결과로 나온 불교 유물 또한 가치가 있으므로 도봉서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최종 심의결과로 부결을 통보하였음.

- 이에 대해 (사)도봉서원은 2012년 5월 (사)도봉서원 소유의 사우와 담장, 유도문을 철거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이는 도봉서원 중흥기의 건축과 조경으로의 복원을 전제로 한 동의였으므로, 도봉서원 중흥기로의 복원이 어렵다면 발굴조사를 위한 철거 전 상태로라도 복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청원을 하게 된 것임.

- 청원의 내용은 지정문화재의 복구 명령, 현상변경 허가에 해당하고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이미 도봉서원은 문화재적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우선으로 하여 원형고증에 의한 복원이 추진되어야 하며, 복원계획에 앞서 유적의 경계와 범위 확인 및 부속건물 존재 가능성에 대해 추가 발굴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도봉서원으로 복원화하는 사업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는 추가 발굴 또는 학술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반복될 수 없는 최종 결론임.

- 또한 발굴조사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복토한 후 발굴조사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발굴조사 결과 국보급 유물을 포함해 영국사 관련 유물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조계종으로부터 도봉서원 복원화사업 전면 재검토 및 불교 유적 보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갈등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봉서원과 영국사의 관계 등에 대하여 문화재 발굴, 서원 및 불교건축 등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추가 발굴 및 학술연구 등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인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도봉서원 복원화사업 부결 이후 대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의 건 서

청 원 명 : 도봉서원 사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

처리해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

채택의견

- 본 청원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가 본 청원의 요청 사항뿐 아니라 본 청원이 제기된 배경과 근본 원인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5	접수연월일	2014. 10. 16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282-329번지	
	성 명	이병준외 31명	
소개의원	김동욱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 명	도봉서원 사우(祠宇)의 원상 회복에 관한 청원		
소 관 위 원 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봉서원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정암 조광조와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는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사액서원임</li> <li>○ 2009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2010년과 2013년 복원정비 계획 심의 및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2014. 8.28 발굴 유구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복원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li> <li>○ 2012. 5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해 1971년 복원되었던 도봉서원 사우와 담장,유도문을 철거하는데 동의하였으나 도봉서원 복원은 커녕 사우의 원상회복에도 미온적인 서울시는</li> <li>○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도봉서원 사우를 원상회복하여 지역주민과 유림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돌려 주기 바람</li> </ul>			